

뉴욕주  
아동 및 가족 복지국  
**입양 보조금 용어집**

**입양 보조금 및 임시 입양 비용 계약서(LDSS-4623A):** 본 문서는 입양 부모와 지역 사회 복지 부서 또는 뉴욕주 아동 및 가족 복지국 간의 지급에 대한 법적 계약서입니다. 본 법적 계약서는 반드시 승인된 양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양식에 지정된 날짜가 되어야만 유효합니다. 본 문서에는 모든 필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입양 부모는 최종 승인된 입양 보조금 및 임시 입양 비용 계약서 사본을 계약 기간 동안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위치에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양 배정:** 입양을 목적으로 아동을 가정에 배정했으며 해당 기관과 아동의 예비 입양 부모는 입양 배정 계약서(APA)에 서명했습니다. 그러한 APA 계약 사실은 사회 복지법에 따라 기록되었습니다.

**승인된 보조금:** 예비 또는 입양 부모, 지역 사회 복지 부서 담당관 및 뉴욕주 입양 복지국(NYSAS) 담당관이 서명한 경우, 입양 보조금 및 임시 입양 비용 계약서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승인된 입양 부모:** 지역 사회 복지 부서, 공인된 자원 봉사 기관 또는 법원에서 아동을 입양하도록 승인한 사람.

**감사의 필요성:** 모든 공적 자금 지출의 사용에 관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지출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 또는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사도 수행됩니다. 이러한 재정 및 프로그램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지방, 카운티, 주 및 연방 담당관 또는 회사에서 입양 보조금 승인 및 프로그램 운영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공적 자금이 승인된 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긍정적인 감사 결과가 나옵니다. 승인되지 않은 지출을 한 경우 상환 및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규정 및 정책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금에 대한 입양 보조금 계약에는 의사,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또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문서가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상태 또는 아동의 입양에 심각한 제약이 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진단 또는 평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력 발생일:** 효력 발생일은 입양 보조금 지급이 시작되는 날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복지 담당관이 후견 및 양육권을 가진 아동의 입양이 최종 결정되면 생활비 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최종 승인:** NYSAS 담당관 또는 NYSAS가 승인한 담당관이 검토하고 서명해야만 입양 보조금 및 임시 입양 비용 계약서에 대한 검토 과정의 마지막 단계가 완료됩니다.

**위탁 양육 위원회 요율:** 이것은 사회 복지 담당관 또는 공인된 자원봉사 기관이 후견 및 양육권을 가진 아동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입양 부모 또는 예비 입양 부모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위탁 양육 위원회 요율은 아동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며 규정에 정의된 대로 일반/보통(기본) 특별 또는 예외로 설정됩니다.

**장애 아동:** 장애 아동은 특정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상태나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을 의미하며, 이는 아동의 입양에 중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해당 복지국에서 판단한 경우입니다.

**배정하기 어려운 아동:** 장애 아동이 아닌 아동으로서, 입양 기관에 입소 후 6개월 이내에 입양 가정이 배정되지 않았거나 입양 중단 후 6개월 이내에 배정되지 않은 아동. 또한 입양 배정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지정된 기간 동안 배정되어 있었거나 특정 연령, 형제자매 그룹 또는 기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아동도 배정되기 어려운 아동의 조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자/후견인:** 법적 보호자/후견인은 양부모가 사망한 후 법원이 지정한 보호자 또는 후견인을 말합니다. 수취인 변경 신청은 **LDSS-4623C-2** 양식을 사용하여 뉴욕주 입양 복지국에 제출해서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 지원(MA)/Medicaid:** 이것은 제IV-E장 자격이 있거나 제IV-E장 자격이 없지만 최종 확정 전 1985년 연방 통합 옴니버스 예산 조정법(COBRA) 조항에 따라 자격이 있는 아동을 위한 의료비 보장입니다.

**의료 보조금:** 이것은 Medicaid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입양 아동(들)에 대한 의료비 환급입니다(위 내용 참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입양 부모가 자녀의 의료비를 지급하고 지역 사회 복지 부서에 환급 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지역 사회 복지 부서에서 지급되며 뉴욕주의 의료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해당 치료, 서비스 및 용품에 대한 지급 일정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입양 부모가 보유한 다른 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으나, 의료 보조금으로 지급 혜택 자격이 있는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 입양 비용:** 임시 입양 비용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입양 최종 결정과 관련된 합리적인 일회성 비용입니다. 혜택 대상 아동이 자격을 갖추려면 입양이 최종 결정되기 전에 입양 보조금 및 임시 입양 비용 계약서가 승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아동의 입양이 최종 결정된 후 환급되며 뉴욕주 아동 및 가족 복지국에서 설정한 최대 수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양 최종 결정 후 2년 이내에 입양 최종 결정 전 아동의 양육권을 가진 지역 사회 복지 부서에 영수증 또는 기타 적절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 지원 아동이 모두 다 임시 입양 비용 혜택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양 후 최종 결정 신청:** 사회복지부 장관 또는 공인 자원봉사 기관을 후견인으로 하며 보조금 없이 입양이 최종 결정된 아동에 대한 입양 보조금 서면 요청서(**LDSS-4623B**)입니다. 입양 최종 결정 이후에 입양 부모가 아동의 상태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의사가 아동의 입양 이전에 그런 상태가 존재했음을 확인했거나 공정한 청문회에서 아동이 입양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 입양 부모는 아동의 기존 상태에 대해 보조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전문가:** 자격을 갖춘 전문가는 뉴욕주 면허를 소지한 개업 간호사 또는 의사의 보조자 또는 정신 지체 발달 장애 사무국(OMRDD), 정신 건강국(OMH) 또는 사회 보장국(SSA)의 전문 직원으로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상태 및 적격성을 평가 또는 진단하기 위해 조직에서 요구하는 자격 증명을 충족합니다.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발급한 문서는 특정 신청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규정:** 뉴욕주의 입양 보조금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연방 및 주정부 지시 사항을 말합니다.

**대리 또는 입양인 수취인:** 입양인 수취인(만 18~21세) 또는 대리 수취인이란 입양 부모가 사망한 후 사회 복지 지구에서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지명된 자를 말합니다. 수취인 변경 신청은 **LDSS-4623C-2** 양식을 사용하여 뉴욕주 입양 복지국에 제출해서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생활비 보조금 지급:** 이것은 승인된 입양 보조금 및 임시 입양 비용 계약서에서 인증된 대로 입양될 예정이거나 이미 입양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돌보기 위해 부모 또는 기타 승인된 수취인에게 지급되는 월별 입양 지급금입니다. 생활비 지급 요율은 지역 사회 복지 부서의 위탁 양육 위원회 요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율 수준은 개인별 문서로 작성한 필요 사항에 따라 기본, 특별 또는 예외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요율은 자녀의 나이, 입양 부모의 주소 또는 부모의 수입과 가족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수정:** 이것은 입양 최종 결정 후 이미 승인된 계약서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서면 요청서(**LDSS-4623C-1**)입니다. 기술적인 수정 시 지급 수준은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술적인 수정 시 다음의 변경 사항이 포함됩니다.

- 입양된 아동이 두 번째 부모에 의해 입양된 경우 계약서에 또 다른 입양 부모 추가, 또는
- 혼인 상태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에 적힌 입양 부모의 이름 변경 또는
- 혼인 상태의 변경으로 인한 법적 보호자 또는 후견인 또는 대리 수취인의 이름 변경.

**업그레이드 또는 실질적인 수정:** 업그레이드나 실질적인 수정은 서면 요청서(**LDSS-4623C-2**)에 의한 것이며 입양이 최종 결정된 후에 보조금 요율이나 자격의 조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 수정합니다. 다음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양 당시 부모에게 알려진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또는 원래 계약 및 현재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은 장애 상태가 발생하여 요청하면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합니다.

다음은 위해 실질적인 수정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양 부모의 사망 시 법적 보호자 또는 후견인, 입양인 또는 대리 수취인을 추가하기 위해
- 아동의 보조금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규정의 조항으로 인해 변경하기 위해
- 공정한 청문회 결정을 준수하기 위해.

**참고:** 뉴욕주 공인 자원봉사 기관에 직접 인도된 아동의 경우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00-345-5437**번으로 뉴욕주 입양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